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은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85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이은림, 강석주,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민석,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영실, 이종태, 이종환, 정준호,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0명)

1. 제안이유

- 조례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악취방지법」 개정시행에 따라 악취실태조사,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등의 관련 조항을 수정·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악취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나.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함. (안 제4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함. (안 제5조~제6조)
- 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수정함. (안 제8조)

- 마.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 (안 제9조)
- 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0조~제12조)
- 사. 생활악취 자율관리 협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3조)
- 아. 기타 상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함. (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악취방지법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 이전에 악취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생활악취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악취지도의 작성) ① 시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 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악취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유지관리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배출시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등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악취방지(저감)시설 설치·개선 사업비의 지원대상 등을 심의하고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생활악취 및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생활악취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악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 신청 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집행 시기, 구비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신고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 받은 사업을 개시·종료·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 신청을 받은 사업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보조금의 반환 조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2. 보조금 교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신청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부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 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호 또는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생활악취 자율관리 협약) 시장은 생활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해결을 위한 생활악취 배출시설의 자율관리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